

의안번호	2211544
의 퇴 인	천하람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2.
추계번호	25G209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벤처시장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시장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·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3,794억원, 2029년 4,057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,826억원(연평균 3,942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또한, 개정안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(안 제12조의4)의 경우, 현행 적용기한(2027.12.31.)의 연장 없이 공제율 확대만 포함되어 있어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간 발생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(안 제12조의4)	-119	-119	-	-238	-119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)	-91	-91	-91	-273	-91
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의2)	-1,550	-1,730	-1,932	-5,213	-1,738
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	-139	-139	-139	-417	-139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조)	-1,895	-1,895	-1,895	-5,685	-1,895
계	-3,794	-3,974	-4,057	-11,826	-3,94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3 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)	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공제율) 10% → 20%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2	안 제12조의4 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	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－ (공제율) 5% → 20%	
3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 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-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및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4	안 제13조의2 (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공제율) 5% → 10%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5	안 제14조 (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-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6	안 제16조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(공제율) 벤처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, 10% → 20% -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, 3천만원 이하 100%, 3~5천만원 70%, 5천만원 초과 30% → 5천만원 이하 100%, 5천만~1억원 70%, 1억원 초과 30% －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30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조의3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)	×	○ 동 조항의 공제실적은 최근 5년간 1건('21년, 18억원) 발생하는 등 향후 발생빈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2	안 제12조의4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3	안 제13조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	
4	안 제13조의2(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5	안 제14조(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6	안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	○ 개정안의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는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는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효과만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(안 제12조의4)
 - 향후 공제대상인 기술가치 금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으로

발생한다고 가정

- 동 조항의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공제실적은 공제율(10%)의 변화 없이 2020년 47억원에서 2024년(잠정) 18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연도별 증감추이가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음
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에 따른 공제실적의 증가는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이 비례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

□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(안 제13조)

-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(잠정) 6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□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3조의2)

- 향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18~2024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(11.6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내국법인의 직접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,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 간접투자 증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내국법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에 따른 공제실적의 증가는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이 비례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

□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4조)

- 향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과세특례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2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6조)

- 향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4년 잠정 실적(1,895 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-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,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(안 제12조의3 및 제16조)
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, 감면실적의 발생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동 세액공제의 발생은 2021년 1건(18억원)으로,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발생여부와 규모는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음
 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경우, 세수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
 - 출자·투자금액 규모별, 투자 대상별(각 호별)로 소득공제율이 상이하나,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 시 각 호별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(안 제12조의4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·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법인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 - 동 제도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인수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
 - 동 제도는 2024년말 세법개정으로 공제율을 기존 10%에서 5%로 인하
 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·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%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R&D 비용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% 이상인 중소기업, 기타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중소기업 등
- 기술가치 금액: (기술평가기관이 인수법인의 주식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 평가액의 총합) × (인수법인이 인수한 지분비율)
※ 단, [매입가액 - (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인수법인이 인수한 지분비율)]을 기술가치 금액의 한도로 함

○ 적용기한: 2027.12.31.

□ (감면실적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의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47억원에서 2024년 (잠정) 18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연도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 - 동 실적이 발생한 기간 중 공제율은 10%

[표 2]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연평균 (‘20~’24년)
공제실적	47	38	53	76	182	79.2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공제대상인 기술가치 금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수준 (792억원)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- 2020~2024년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과 당시 적용된 공제율(10%)을 바탕으로 공제대상인 기술가치 금액을 역산하여 추정

[표 3] 공제대상인 기술가치 금액의 산정내역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연평균 (‘20~’24년)
공제실적(A)	47	38	53	76	182	79.2
공제율(B)	10					10
기술가치금액(AB)	470	380	530	760	1,820	792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향후 공제대상인 기술가치 금액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향후 기술가치 금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추정치인 792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
 - 단,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7.12.31.)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간 발생
 - 공제율 차이: 15%p (현행 5%, 개정안 20%)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
기술가치 금액 추정치(A)	792	792
세수 감소효과 추정치(A×15%)	119	119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119억원, 2028년 119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238억원(연평균 1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(안 제12조의4)	-119	-119	-238	-119

나.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3조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

-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*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
 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 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- ※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: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
-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적용기한: 2025.12.31. →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최근 5년 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(잠정) 64억원으로 감소
 -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,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6]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: 2020~2024년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(단위: 억원) 연평균 ('20~'24년)
비과세	24	41	120	205	64	91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비과세 규모인 91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	91	91	91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는 2027년 91억 원, 2029년 91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273억원(연평균 9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3조)	-91	-91	-91	-273	-91

다.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
(안 제13조의2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
 - 공제대상자: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

- 출자(투자) 대상
 - ①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②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- 공제세액: (현행)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 → (개정안) 10%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-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감면은 2018년부터 발생하였으며, 벤처투자 확대에 따라 감면실적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
[표 9]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: 2018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135	172	260	335	676	652	557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벤처기업 신규투자 현황)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기업 신규투자액은 3.4조원에서 2024년 6.6조원으로 증가
 - 2018~2024년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.6%
 - 2021~2022년 신규투자액 급증은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

[표 10]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 현황: 2018~2024년

(단위: 개소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'18~'24 연평균 증가율
투자받은 기업수	1,399	1,608	2,130	2,438	2,474	2,281	2,494	10.1
투자액	34,249	42,777	43,045	76,802	67,640	53,977	66,315	11.6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)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2018~2024년간 벤처기업 신규투자액 증가율에 따라

향후 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액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, 2018~2024년간 벤처기업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(11.6%)을 적용하여 추계기간(2027~2029년)의 적용기한 연장시 공제액 규모를 추계
-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~2029년에 발생

[표 11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세수효과 추계 (적용기한 연장)	775	865	966

- (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)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을 반영하여 추계

-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면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 -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=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× (10%-5%)/5%

[표 12]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	2029
세수효과 추정치	적용기한 연장(A)	775	865	966
	공제율 인상(B=A×(10-5)/5)	775	865	966
	계(A+B)	1,550	1,730	1,932

(3) 추계결과

-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,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1,550억원, 2029년 1,932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,213억원(연평균 1,73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및 적용 기한 연장(안 제13조의2)	-1,550	-1,730	-1,932	-5,213	-1,738

라.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자 등이 창업기업 등예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
 - 공제대상: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신기술사업자, 창업기획자 등예 출자한 투자자, 벤처투자조합 등
 - 공제내용: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조세지출 실적)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19년 19억원에서, 2020년 212억원, 2021년 317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2년에는 124억원, 2023년에는 23억원으로 감소

[표 14]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5년 평균
조세지출액	19	212	317	124	23	139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실적의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 - 창업기업 등예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·지분 양도차익의 실현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, 조세지출 실적치의 변동성이 큼에 따라 최근 5년 평균치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39억원, 2029년 139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417억원(연평균 1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)	-139	-139	-139	-417	-139

마.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등(안 제16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의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
 - 공제대상: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
 - 공제율: (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경우) 10% → 20%
(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) 투자금액의 30~100%
※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~5천만원 50%, 5천만원 초과 30% →
5천만원 이하 100%, 5천만원~1억원 50%, 1억원 초과 3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(조세지출 실적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1,895억원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61.8% 증가
 - 201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, 연도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
 - 2022년 조세지출 실적은 전년 대비 66.0% 증가한 반면, 2024년은 전년대비 0.5% 감소

[표 16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 (실적)	2021 (실적)	2022 (실적)	2023 (실적)	2024 (전망)	2021~2024 연평균 증가율
조세지출액 (증가율)	891 (50.3)	1,075 (20.7)	1,785 (66.0)	1,905 (6.7)	1,895 (-0.5)	- (20.8)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,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,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(3) 추계결과

□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,895억원, 2029년 1,895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,685억원(연평균 1,8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1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6조)	-1,895	-1,895	-1,895	-5,685	-1,89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